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 329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천 지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329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주혜(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1. 29.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6. 21:42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9분 44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분 42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1:42경에 전송했던 음란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9. 11:26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난 할꺼요 당신의 행동을 차례차례 유부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꼭 실천할꺼요 먼저 당신 남편에게'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1:56경부터 12:59경까지 사이에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월요 일부터 보자구요 내 힘을 깜짝 놀랄거요 씻을 수 없는 당신의 행동을', '나 미친놈 한번 당하고 물려봐', 'E에게 정확한 문자 공개할게요'라는 D메지시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각 D 메시지 캡쳐사진, D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하성우